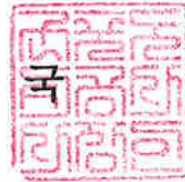


「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」 일부개정내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배 재



2024년 12월 27일

군포도시공사 내규 제 100 호

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

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1항을 각 제1항과 제2항으로 다음과 같이 개정하며, 제3조 제2항에서 제7항을 제3항에서 제8항으로 변경한다.

- ① 규정 제8조에 의한 직원 채용은 공사 내외부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NCS 기반 직무수행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하여야 하고 직무분석에 따른 직무기술서를 활용하여 채용을 진행해야 한다.
- ② 채용 시 전형방법은 서류전형, 필기시험, 실기시험, 면접시험 중 3개 이상의 전형방법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되 반드시 필기시험은 포함해야 한다. 단, 일반직 2급(계약직)의 경우 채용절차의 효율성 및 예산절감을 위해 서류 및 면접시험을 통해서만 채용할 수 있다.

제4조 제1항 제1조에서 제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1. 필기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건과 역량을 바탕으로 NCS 직업기초능력을 검정하며 필요에 따라 직무수행능력(전공시험)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.

2.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, 지식, 기술, 태도 등을 반영한 NCS 기반 면접방식으로 한다.
3.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, 경력, 지식, 기술 등 정해진 기준에 응시자가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. 다만, 응시인원을 고려하여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수긍 가능한 기준으로 배수를 정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.

제25조제2항의 별표3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[별표 3] 평정대상자별 평정자 및 확인자(제25조 관련)

평정대상자	평 정 자		확 인 자	가감점 (± 5점)
	1차	2차		
부장	본부장		사장	
팀장	부장	본부장	사장	
사장직속부서(팀장)	실장·부장		사장	
담당	팀장	부장	본부장	사장
사장직속부서(담당)	팀장	실장·부장	사장	

※ 본부장 및 사장직속부서의 부서장은 사장이 단독으로 평정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	관 부 서	경 영 기 획 실
입 안 자	직 위 성 명	경 영 기 획 실 장 관 성 우
	직 위 성 명	인 사 총 무 팀 장 신 재 두
	담당자 성명 (전 화)	현 진 환 (3 9 0 - 7 6 4 1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신규채용)</p> <p>① 규정 제8조에 의한 직원 채용은 공사 내외부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<u>시험공고를 하여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을 하여야 하고, 서류전형, 필기시험, 실기시험, 면접시험 중 3개 이상 전형방법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되 반드시 필기시험을 포함해야 한다.</u> 단, 일반직 2급(계약직)의 경우 채용절차의 효율성 및 예산절감을 위해 서류 및 면접시험을 통해서만 채용할 수 있다.</p> <p>②~⑦ (생략)</p>	<p>제3조(신규채용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<u>NCS 기반 직무수행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하여야 하고 직무분석에 따른 직무기술서를 활용하여 채용을 진행해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채용 시 전형방법은 서류전형, 필기시험, 실기시험, 면접시험 중 3개 이상의 전형방법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되 반드시 필기시험은 포함해야 한다.</u> 단, 일반직 2급(계약직)의 경우 채용절차의 효율성 및 예산절감을 위해 서류 및 면접시험을 통해서만 채용할 수 있다.</p> <p>③~⑧ (현행 2항~7항과 동일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4조(시험의 방법)</p> <p>① (생략)</p> <p>1. 필기시험은 <u>직무수행에 필요한 NCS 직업기초능력을</u> 검정하며 필요에 따라 직무수행능력(전공시험)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.</p> <p>2. 면접시험은 <u>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NCS 기반 면접방식</u>으로 한다.</p> <p>3. 서류전형은 <u>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,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</u>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. 다만, 응시인원을 고려하여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수급 가능한 기준으로 배수를 정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.</p>	<p>제4조(시험의 방법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 <u>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건과 역량을 바탕으로</u> ----- -----.</p> <p>2. ----- <u>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, 지식, 기술, 태도 등을 반영한</u> ----- -----.</p> <p>3. ----- <u>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, 경력, 지식, 기술 등 정해진 기준에 응시자가 적합한지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현 행

평정대상자별 평정자 및 확인자(제25조관련)

평정대상자	평 정 자		확 인 자	가감점 (± 5점)
	1차	2차		
부장	본부장		사장	
팀장	부장	본부장	사장	
사장직속부서(팀장)	실장·부장		사장	
정비사업팀(팀장)	본부장		사장	
담당	팀장	부장	본부장	사장
사장직속부서(담당)	팀장	실장·부장	사장	
정비사업팀(담당)	팀장		본부장	

※ 본부장 및 사장직속부서의 부서장은 사장이 단독으로 평정한다.

개 정 안

평정대상자별 평정자 및 확인자(제25조관련)

평정대상자	평 정 자		확 인 자	가감점 (± 5점)
	1차	2차		
부장	본부장		사장	
팀장	부장	본부장	사장	
사장직속부서(팀장)	실장·부장		사장	
담당	팀장	부장	본부장	사장
사장직속부서(담당)	팀장	실장·부장	사장	

※ 본부장 및 사장직속부서의 부서장은 사장이 단독으로 평정한다.